

서울회생법원

제 4 부

결 정

정본입니다.

2018. 10. 8.  
법원사무관 김용선



사 건 2016회합100149 회생  
채 무 자 (분할준속회사)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 
창원시 성산구 남면로381 [내동, STX중공업(주) 본사]  
법률상관리인 정태화

주 문

1. 관계인집회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'2018. 10. 12. 10: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'에서 '2018. 11. 2. 14: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'으로 변경한다.
2. 관리인, 채무자,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.

이 유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 제1항,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10. 8.

재판장

판사

정준영



판사

이진웅



판사

이현오

